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第1號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會議錄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8月 13日(火) 13時 10分 開議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 選出의 件
2.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幹事 選任의 件
3.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計劃書 承認의 件

審査된 案件

1.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 選出의 件 1 面
2.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幹事 選任의 件 2 面
3.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計劃書 承認의 件 2 面

(13時 10分 開議)

○委員長 代理 玄壽漢 본인이 연장자로 종로구구 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또 많은 장마피해도 보아왔고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역관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특별위원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開議를 선포합니다.

1.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 選出의 件

(13時 11分)

○委員長 代理 玄壽漢 의사일정 제1항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 選出의 件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장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吳錦南委員!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발의자이신 安哲柱委員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도 하였고 발의도 하였고 또 종로구 재산에 깊은 관여도 하고 계시니까 安哲柱委員을 저는 추천합니다.

○委員長 代理 玄壽漢 우리 安哲柱委員을 특별위원장으로 호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委員 있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호선추천을 종결합니다. 安哲柱委員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安哲柱委員을 본 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본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되신 安哲柱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 委員長 代理, 安哲柱 委員長과 사회교대)

○委員長 安哲柱 玄壽漢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력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 구유재산은 우리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1988년5월 구 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 재산을 찾는다 또 내 재산을 지킨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사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다음 후대에 종로구의 효율적인 재산행정과 종로구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가장 기여했던 위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2.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幹事 選任의 件

(13時 15分)

○委員長 安哲柱 의사일정 제2항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幹事 選任의 件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1항 및 2항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겠습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沈載得委員!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得委員 간사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宣相善委員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安哲柱 沈載得委員께서 宣相善委員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추천할 분이 안 계시면 추천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宣相善委員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宣相善委員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宣相善委員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宣相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산을 지키고 또 찾고 그래서 우리 후세에게 한점 부끄럼없이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을 모시고 간사로서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哲柱 宣相善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3.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計劃書 承認의 件

(13時 17分)

○委員長 安哲柱 의사일정 제3항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計劃書 承認의 件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에 보면 목적이 1998년 5월 1일 구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구유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의 소유상

태와 관리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재산운영의 극대화를 기해서 자치단체인 종로구의 재정확충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구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현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88년 5월 1일부로 구유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소유권 현황을 정리하지 못한 재산들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은 종로구에는 현재 종로구 소유 950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어떤 곳은 건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의 재산, 시민국 소관의 재산, 또 도시정비국 소관의 재산 각 부서별로 현재 적정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 보유상태와 실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유재산 공구정리 현황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현재 소유권 등기만이 아닌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관리대장 공부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활동 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인 종로구청에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특히 여러 조사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사 기간 및 일정은 '96. 8. 14부터 '96. 9. 13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것은 '96. 8. 14부터 '96. 9. 1까지는 자유준비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가정복지과에 행정재산에 대한 자료와 재무국 소관 동청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관내에 있는 서울시 소유 토지 구유토지에 대한 것은 이미 자료를 확보해 뒀습니다. 차후로 요청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것은 세부재산 목록에 의해서 구유재산으로

서울시로부터 인수인계 했던 목록들에 대한 부분과 기타 구유재산 소유현황에 대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청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사활동을 하는데 완벽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 2 구유재산 현황 청취를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 2 ~ 9. 7 까지 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와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까지 하겠습니다. 9. 9 ~ 9. 10는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9. 11 ~ 9. 13까지 본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잠정적으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 13이후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편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이미 선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종로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이신 윤주채 전문위원과 의정계장님, 이영재, 김정동, 남승범, 서은미, 정은희, 민홍기씨가 수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조사 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그 다음 현지 확인 관련서류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항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參照)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 목 적

1988년 5월 1일 구 자치제가 실시 되면서 구유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의 소유상태와 관리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통해 재산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재고하기 위함.

□ 조사의 범위

○ 구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현황

4 (第62回-區有財產特委 第1次)

☐ 구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 관리 운영현황 ☐ 소관 부서별 재산보유 현황 ☐ 구유재산 공부정리 현황 ☐ 기타 ☐ 조사 기간 및 일정 ☐ 기간 : '96. 8. 14 ~ '96. 9. 13 ☐ 일정 - '96. 8. 14 ~ '96. 9. 1 자료준비 - '96. 9. 2 구유재산 현황청취 - '96. 9. 2 ~ '96. 9. 7 관련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 '96. 9. 9 ~ '96. 9. 10 질의 및 답변 - '96. 9. 11 ~ '96. 9. 13 보고서 작성 - '96. 9. 13 이후 임시회의시 본회의 보고	☐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 위원장 : 안철주 ☐ 간 사 : 선상선 ☐ 위 원 : 이병문, 현수한, 심재득, 이형술, 오금남, 김이환, 김정대 ☐ 보조직원: 전문위원 윤주채, 의정계장 이영재 김경동, 남승범, 서은미, 정은희, 민흥기 ☐ 조사 요령 ☐ 조사 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확인 또는 관련서류 조사 ☐ 조사 항목																						
분	아	항	목	내	용																		
제	도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규칙		☐ 구유재산의 총괄 현황 ☐ 구유재산의 관리체계 및 책임한계																			
재	산	구유재산		☐ 구유재산(토지, 건물)소유실태 조사 ☐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 구유재산의 증·감 현황 실태조사 (취득, 용도폐지, 관리전환, 기부채납등) ☐ 구유재산중 위탁허가한 재산현황 및 관리상태 ☐ 구유재산중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내역 ☐ 구유재산 소유권 등기 현황																			
기	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조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 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13時 26分 散會)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별첨 2. 제출서류 부수 : 15부 3. 제출일시 : 1996. 9. 2 4. 제출장소 : 구의회사무국 1998년 8월 일 종로구구유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서류제출 목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80%;">서 류 제 출 명</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내무부 시유재산조정 지침('87. 5. 18) 사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서울시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서 사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2번에 의한 시 소유재산 목록(집계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2번에 의한 구 소유재산 목록(집계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2번에 의한 구유재산 인수 목록(집계표)</td> <td></td> </tr> </table>		연번	서 류 제 출 명	비고	1	내무부 시유재산조정 지침('87. 5. 18) 사본		2	서울시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서 사본		3	2번에 의한 시 소유재산 목록(집계표)		4	2번에 의한 구 소유재산 목록(집계표)		5	2번에 의한 구유재산 인수 목록(집계표)	
연번	서 류 제 출 명	비고																					
1	내무부 시유재산조정 지침('87. 5. 18) 사본																						
2	서울시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서 사본																						
3	2번에 의한 시 소유재산 목록(집계표)																						
4	2번에 의한 구 소유재산 목록(집계표)																						
5	2번에 의한 구유재산 인수 목록(집계표)																						
수 신 : 종로구의회 의장 참 조 : 의회사무국장 제 목 : 서류제출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																							

연번	서 류 제 출 명	비고
6	구유재산 관련부서 공무원 역임현황 ('87. 5. 18 ~ '96. 8. 12)	
7	종로구 관내 국·공유지 실태조사표 사본	
8	'96 종로구 개별공시지가 대장 사본	
9	종로구 관내 20m이상 도로현황도	

수 신: 종로구의회 의장

참 조: 의회사무국장

제 목: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일시: 계획서 참조
2. 보고장소: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3. 보고내용: 소관업무 사항

1996년 8월 일

종로구구유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수 신: 종로구의회 의장

참 조: 의회사무국장

제 목: 관계공무원(참고인)출석·답변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및 해당업체
2. 출석일시: 계획서 참조
3. 출석장소: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1996년 8월 일

종로구구유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수 신: 종로구의회 의장

참 조: 의회사무국장

제 목: 현장확인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준비일시: 계획서 참조
2. 준비장소: 구청광장 앞

3. 준비사항: 차량 2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996년 8월 일

종로구구유재산조사 특별위원회

○出席 委員 8人

安哲柱 宣相善 李炳文 吳錦南 沈載得
金以煥 金正大 玄壽漢

○出席 專門委員

尹柱彩

